
Policy and Law Report _Vol.85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1. 5.10 ~ 5.16) -

May 17, 2021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 ① 공포 법안
 -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 ③ 법률 발의안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	내용	일시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	•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전략」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22차 전체회의에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전략」’을 발표함. 이번 전략은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인공지능 구현”을 비전으로 하여, 기술·제도·윤리 측면의 3대 전략과 10대 실행과제를 통해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민간의 인공지능 서비스 구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이용자가 믿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며, 사회 전반에 건전한 인공지능 윤리를 확산하는 것이 중점 방향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신뢰구현 법제도·윤리·기술적 요구사항을 종합한 인공지능 ‘개발 가이드북’ 제작·보급, ② 인공지능 제품·서비스에 대한 민간 자율의 인증제 도입·지원, ③ 인공지능 일괄(One-Stop) 지원 플랫폼 운영 : 데이터 - 컴퓨팅 파워 - 신뢰성 검증 지원, ④ 설명가능성·공정성·견고성 등 향상을 위한 신뢰성 원천기술 개발 추진, ⑤ 학습용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표준 기준 제시 및 데이터 개방, ⑥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국민 안전·신뢰성 향상 방안 연구, ⑦ 인공지능 윤리기준 실천을 위한 윤리 교육 강화 및 개발자·이용자용 체크리스트 보급, ⑧ 윤리·신뢰성 향상을 위한 공론의 장인 ‘윤리 정책 플랫폼’ 운영 등이 있음	2021-05-13
산업통상 자원부	•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공청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가입 관련 對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DEPA 가입 계획을 수립하기 앞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대국민 의견을 수렴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비즈니스·무역 원활화) 종이없는 무역(paperless trading) 관련 기존 규범의 의무수준을 높이고 전자송장·전자결제 등 기존 FTA 대비 신규범 창출, ② (소비자 권익 보호) 전자상거래 분쟁해결을 위한 매커니즘, 국가간 개인정보보호 법제 호환성 증진 매커니즘 개발 노력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가간 협력 강조, ③ (디지털 비즈니스 자유화) 디지털 제품 비차별대우, 자유로운 국경간 데이터 이전, ④ (기타) 핀테크 기술, 디지털 분야의 경쟁 정책, AI 거버넌스, 공공정보 개방 등 새로운 디지털 트렌드에 관한 국가간 협력 증진 등이 있음	2021-05-11
	• 「수출입물류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 발표, 관계부처 비상대응 TF 가동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가중되는 수출기업들의 물류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출입물류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을 마련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5월 중 미주 동안·서안에 임시선박 총 6회(32,800TEU) 투입, 유럽 항로에도 6월까지 신조선박(16,000TEU급) 매주 1척씩 총 6척 투입, ② 중소화주에게 매주 미주 동안向 선박을 50TEU 신규 배정, 한시 배정 중인 미주 서안向 350TEU, 유럽向 50TEU는 연말까지 연장, ③ 중소·중견화주 운임지원 규모를 現 70억원에서 121억원 수준으로 확대, 기업당 지원한도는 최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 ④ 부산신항 대체장차장 제공, 컨테이너 6만대 공급, 세관신고 간소화 등 물류 적체 해소를 위해 다각적 지원 등이 있음	2021-05-12

부처	내용	일시																			
중소벤처 기업부	•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종합 지원’ 실시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보호 선도 중소기업 육성프로그램’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5월 10일 (월)부터 6월 9일(수)까지 모집한다고 밝힘. 올해는 시범적으로 10개 중소기업을 선정해 육성할 계획이며 체계적 지원이 완료된 후, 기술보호 역량수준이 75점 이상일 경우 ‘기술보호 선도 중소기업’ 인증서 발급과 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 가점을 부여할 예정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기술보호 전문가 자문 : 참여기업의 기술보호정책, 교육, 인력관리 분야에 대해 기술보호·법률 전문가의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여 보안수준 역량과 법적대응 능력을 제고(최대 10일간 자문료 전액 지원), ② 기술자료 임치 : 참여기업의 핵심 기술정보를 재단 내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하여 기술개발 시점과 보유 사실 입증(최대 90만원 수수료 지원), ③ 기술지킴 서비스 : 정보자산 보안을 위해 관제 서비스, 내부정보 유출방지와 악성코드, 랜섬웨어 탐지 지원(최대 183만원 지원), ④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 기업의 기술적·물리적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보안시스템 구축 비용(최대 50%, 4,000만원) 지원 등이 있음	2021-05-10																			
공정거래 위원회	• 착한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상생 지원, 지속·확산 정책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 개편 방안을 발표함. 착한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가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에게 로열티 인하 등을 지원할 경우, 착한프랜차이즈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정책 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주는 사업임. 2021년에는 2020년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결격사유를 도입하고 선정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사업을 개편함 2021년 착한프랜차이즈 확인서 발급 요건 (기존 5개 → 7개)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연번</th><th>착한프랜차이즈 확인서 지원 자격 (①~⑦ 중 하나 충족)</th></tr> </thead> <tbody> <tr> <td rowspan="5">자금 지원 (기존)</td><td>①</td><td>로열티 2개월 50% 이상 인하 / 로열티 1개월 이상 면제</td></tr> <tr> <td>②</td><td>필수 품목의 공급가액을 2개월간 30% 이상 인하</td></tr> <tr> <td>③</td><td>마케팅(광고·판촉) 비용을 2개월간 20% 이상 지원</td></tr> <tr> <td>④</td><td>매출 감소 등 점주 손실분 2개월 간 20% 이상 지원</td></tr> <tr> <td>⑤</td><td>기타 이에 상응하는 지원 (상기 1~4 중 어느 하나와 동일한 수준의 현금 지원)</td></tr> <tr> <td rowspan="2">상생 협력 (신설)</td><td>⑥</td><td>가맹점사업자와의 상생협력을 전담할 부서를 설치·확대하고 분쟁발생 시 내부 자율 조정기구를 통한 해결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td></tr> <tr> <td>⑦</td><td>가맹점사업자와의 상생협력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 가맹본부-점주 간 모범적인 상생모형을 운영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심사</td></tr> </tbody> </table>	구분	연번	착한프랜차이즈 확인서 지원 자격 (①~⑦ 중 하나 충족)	자금 지원 (기존)	①	로열티 2개월 50% 이상 인하 / 로열티 1개월 이상 면제	②	필수 품목의 공급가액을 2개월간 30% 이상 인하	③	마케팅(광고·판촉) 비용을 2개월간 20% 이상 지원	④	매출 감소 등 점주 손실분 2개월 간 20% 이상 지원	⑤	기타 이에 상응하는 지원 (상기 1~4 중 어느 하나와 동일한 수준의 현금 지원)	상생 협력 (신설)	⑥	가맹점사업자와의 상생협력을 전담할 부서를 설치·확대 하고 분쟁발생 시 내부 자율 조정기구를 통한 해결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⑦	가맹점사업자와의 상생협력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 가맹본부-점주 간 모범적인 상생모형을 운영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심사	2021-05-12
구분	연번	착한프랜차이즈 확인서 지원 자격 (①~⑦ 중 하나 충족)																			
자금 지원 (기존)	①	로열티 2개월 50% 이상 인하 / 로열티 1개월 이상 면제																			
	②	필수 품목의 공급가액을 2개월간 30% 이상 인하																			
	③	마케팅(광고·판촉) 비용을 2개월간 20% 이상 지원																			
	④	매출 감소 등 점주 손실분 2개월 간 20% 이상 지원																			
	⑤	기타 이에 상응하는 지원 (상기 1~4 중 어느 하나와 동일한 수준의 현금 지원)																			
상생 협력 (신설)	⑥	가맹점사업자와의 상생협력을 전담할 부서를 설치·확대 하고 분쟁발생 시 내부 자율 조정기구를 통한 해결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⑦	가맹점사업자와의 상생협력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 가맹본부-점주 간 모범적인 상생모형을 운영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심사																			

부처	내용	일시
식품 의약품 안전처	• 의약품 재평가 기한 연장에 대한 기준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재평가 결과 자료 제출기한 연장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기한 연장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을 5월 13일자로 개정·시행함 이번 개정은 재평가 기한 연장과 관련 업무 처리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는 데 대한 업계와의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재평가 결과 자료 제출을 정해진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제출기한을 ‘1회’에 한하여 최대 ‘2년’까지 연장 요청할 수 있게 됨	2021-05-13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기획재정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한 자에게 주택의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시에 제출해야 하는 세액감면신청서 서식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021-05-13
국방부	• 「방위사업법 시행령」 무기체계를 전체 수명주기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체계지원요소의 개념을 도입하고, 무기체계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국내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부분품 단위로 지정할 수 있는 방위산업물자의 범위에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된 부품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무기체계의 종류에 사이버무기체계 및 우주무기체계를 추가하고, 획득된 무기체계를 전체 수명주기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력화지원요소의 하나로 통합체계 지원요소 도입, ②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된 부품 중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품을 부분품 단위의 방위산업물자로 지정, ③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 결과에 대한 시험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가 소유한 전용기기 또는 물품을 방위산업체 등에 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된 물품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이를 무상으로 양여 등이 있음	2021-05-11
식품의약품안전처	• 「화장품법 시행규칙」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두어야 하는 책임판매 관리자의 자격기준으로 맞춤형 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도록 하고, 종전에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해당 판매업소에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반드시 두도록 하였으나,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판매업소 중 하나의 판매업소에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그리고 책임판매관리자 또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받아야 하는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기초 교육과 보수 교육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021-05-14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국토 교통부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한 분양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 분양받은 자가 해당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며, 아울러 이미 삭제된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바로잡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숙박업 시설기준이 ‘객실 수가 30실 이상’이거나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적용범위 규정에 반영 (안 제2조 제1호 내지 제2호 개정), ② 대리사무계약 내용에 오피스텔·상가 등 분양관리신탁 분양사업장이 공사 중단·지연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공사 이행 방법을 포함하도록 하고, 분양받은 자의 100분의 80 이상이 신탁업자에게 분양사업자의 지위 승계 및 공사이행을 요청하고 신탁업자가 동의하는 경우 공사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제2항 제4호 신설), ③ 분양광고에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법」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건축물이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 신고 대상 시설임을 안내하도록 규정 (안 제8조 제1항 제5호의4 신설) ④ 생활숙박시설에 한하여 분양계약서에 포함할 사항으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 점 및 「건축법」에 따른 주거용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점 등을 분양받은 자가 확인하였음을 증명하는 사항을 추가하도록 규정 (안 제9조 제1항 제9호의3 신설) ⑤ 분양받은 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열거 사항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로서 분양계약서에 계약목적 달성을 수 없어 계약해제 사유로 열거되어 있는 항목을 추가하여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를 확대 (안 제9조 제1항 라목 내지 마목 신설) 등이 있음 ※ 의견제시기간 : 6/22(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정책과)로 제출	2021-05-13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중소벤처 기업부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에 명시된 소셜벤처기업의 요건을 구체화하고, 소셜벤처 지원을 위한 판별제도 운영 및 판별기관을 규정하기 위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소셜벤처기업의 요건 및 판별기관 지정 규정 신설 (안 제11조의4) 1) 사회적 가치 창출역량, 사회적가치 추구의 지속성 등 사회성과 기술의 혁신성, 사업의 성장성 등 혁신성장성 등 소셜벤처기업의 요건 규정 2) 법에 따른 소셜벤처 지원을 받을 경우 ‘소셜벤처 판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소셜벤처기업판별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 ※ 의견제시기간 :6/21(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가계금융과)로 제출	2021-05-10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법제사법 위원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 등 15인)」 올해초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법안심의 과정에서 삭제된 “벌금형의 하한”과 “양형특례조항”을 되살리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법인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벌금형의 하한을 높임(안 제7조), ②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중대재해를 야기한 때에는 유죄 선고 뒤 따로 형의 선고를 위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법원이 양형심리를 위한 국민양형위원을 지정해 심의에 회부하여 피해자 등의 진술을 듣게 하는 등 공판절차 이분화와 국민양형위원 지정 절차를 마련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신설) 등이 있음	2021-05-13
기획재정 위원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인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할 예정임 그러나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주무부처도 없고, 가상자산이 자산인지, 금융상품인지 명확한 정의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과세만 하는 것은 납세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많음 이에 중·장기적으로 과세를 시행하되 가상자산의 개념 정의, 거래소 이용자 보호 장치 마련 등 가상자산에 대한 법과 제도의 준비를 마친 후 시행할 수 있도록 과세 시점을 2023년 1월 1일부터로 일단 1년 유예하고, 향후 1년 동안 시장 정비 여부를 검토하여 추가연장 가능성도 열어놓으려는 것임(안 제37조제5항 및 부칙 제1조제2호 등)	2021-05-13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행정안전 위원회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자동차세를 부과할 때 영업용 및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여 시시당 세액을 정하고, 이에 따라 자동차세를 산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배기량이 낮으면서도 고성능·고가의 자동차가 출시됨에 따라 배기량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저성능·저가의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세를 많이 내는 조세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산정 방식을 현행 배기량 기준에 더하여 자동차가액 기준을 추가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27조 제1항제1호 및 제3항)	2021- 05-13
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위원회	•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5인)」 현행법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포상이나 지원 등을 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구온난화 억제를 통한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남은 온실가스를 흡수·제거함으로써 온실가스 순 배출량이 0이 되도록 하는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였음에도 현행법은 여전히 온실가스 배출 감축만을 장려하고 있어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다각화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탄소중립 추진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탄소중립 대전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현행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탄소중립 추진’으로 용어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5호, 제11조제1항제4호 및 제27조)	2021- 05-11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상임위원회	5/20(목) 14:00	농해수위원회 :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법안심사)	
국회사무처	5/21(금)	「해외의회 포커스」 제39호 발간	
국회도서관	5/18(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60호 발간 - 출생통보제 도입 관련 영국, 미국, 캐나다, 독일 입법례	
	5/20(목)	「현안, 외국에선?」 제12호 발간 - 중국의 기후 변화 대응 정책과 미·중 관계	
	5/21(금)	「최신정책정보:국내」 제85호 발간 - 기업의 AI 도입 및 활용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등	
국회 예산정책처	주중	「국내복귀기업 관련 주요 정책 분석」 발간 - 국내복귀기업 관련 주요 정책, 현황 및 실태 분석을 통한 개선방향 검토	
	5/20(목) 14:00	국민통합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 개최(7차) - 사회안전망 (양재진 연세대학교수) - 재정운용 (박노욱 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	국회의정관 417호
국회 입법조사처	5/26(수) 07:30	제5회 「NARS 시선과 논단」 개최 - 주제: 신뢰받는 부동산 정책의 원칙과 과제 - 발제: 김경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온라인 비대면
국회 미래연구원	5/27(목)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9호 -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검토	
	5/27(목) 13:30	정책토론회 개최 - 국가미래전략 수립과 활용: 성찰과 새로운 방향 제시	국회 회의실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일자	제목	주최	장소
5/17(월) 10:00	부동산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양기대, 허종식 의원실	이룸센터 누리홀
5/17(월) 14:00	다가온 한미정상회담, 반도체 초격자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방안은?	윤상현, 윤창현 의원실 외	유튜브 생중계
5/20(목) 13:30	탄소중립과 SDGs를 위한 녹색전환 이행과 협력 전략 : 2021 PAG 서울 정상회의 기념 공동	유익동 의원실, 외교부, 환경부, GGGI 외	유튜브 생중계
5/21(금) 16:00	2020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강민정 의원실	강민정 TV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1] 지난 주 뉴스레터 중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 첨부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자	제목	주최	장소
5/10(월) 14:00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입법 공청회	김병욱, 성일종, 윤창현, 전재수 의원실	유튜브 김병욱TV
5/10(월) 14:00	대전환의 시대, 새로운 정치의 모색	심상정 의원실	켄싱턴호텔 여의도 15층
5/12(수) 10:00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국회토론회	강득구 의원실, 경기도	글래드호텔 블룸A홀
5/12(수) 15:00	기업 PPA 활성화를 위한 전력시장 제도개선 - 2021년 제4차 전력정책포럼	김성환 의원실, 한국전력공사 외	글래드호텔 블룸A홀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을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 | | |
|---|----------------|-----------------------|
| • 백대용 파트너변호사 | T. 02-316-4630 | E. dybaek@shinkim.com |
| • 박현주 (Hyunju Helen Pak) 선임외국변호사 | T. 02-316-4212 | E. hpak@shinkim.com |
| • 김성범 파트너변호사 | T. 02-316-4432 | E. sbkim@shinkim.com |
| • 홍정아 (Claudia Hong) 선임외국변호사 | T. 02-316-4487 | E. cahong@shinkim.com |
| • 방세희 소속변호사 | T. 02-316-1773 | E. shbang@shinkim.com |
| • 노지은 소속변호사 | T. 02-316-2573 | E. jeroh@shinkim.com |
| • 서예지 소속변호사 | T. 02-316-1787 | E. yjiseo@shinkim.com |
| • 문응필 소속변호사 | T. 02-316-4047 | E. epmoon@shinkim.com |
| • 최유리 소속변호사 | T. 02-316-1748 | E. yrchoe@shinkim.com |
| • 성재열 소속변호사 | T. 02-316-1777 | E. jysung@shinkim.com |
| • 조성환 소속변호사 | T. 02-316-2596 | E. suhcho@shinkim.com |
| • 박희훈 소속변호사 | T. 02-316-7917 | E. hhpark@shinkim.com |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